

의료비지급명세서

소득자 인적사항

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 (또는 외국인등록번호)
③ 상 호	④ 사업자등록번호

()년 의료비 지급명세

의료비 공제 대상자										지급처						지급명세										
⑤ 주민등록번호									⑥ 본인 등 해당 여부	⑦ 사업자등록번호							⑧ 상호	⑨ 의료 증빙 코드	⑩ 건수	⑪ 금액	⑫ 미숙아· 선천성 이상아 해당 여부	⑬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												
					-							-		-</												

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제출자 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()매 (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)
------	--

작성 방법

※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. ③항과 ④항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며,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합니다.
2.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,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.
(예)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
3.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,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"○"표시를 하며,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"×" 표시를 합니다.
4.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.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,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.
5.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.
 -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= 1
 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= 2
 - 진료비계산서, 약제비계산서 = 3
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= 4
(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'급여 본인부담금①'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.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)
 - 기타 의료비 영수증 = 5
- * 신용카드・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6. ⑫ 미국아·선천성이상아 해당 여부 및 ⑬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"○"표시를 하며,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"×" 표시를 합니다.
7.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